

코로나-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

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1년 3월 8일

경기도지사

1. 적용지역: 경기도
2. 처분기간: '21. 3. 8(월) ~ '21. 3. 22.(월)(15일간)
3. 처분대상: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(불법고용 외국인 포함)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(불법체류 외국인 포함)
4. 처분내용
 -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(불법고용 외국인 포함)에게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
 - 외국인 노동자(불법체류 외국인 포함)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을 것
 - ※ 단, '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(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)
 - ※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-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
 - 붙임: (법무부) 외국인 코로나-19 무료검사 안내문 1부.
5. 효력발생시점: 공고즉시 효력 발생

6. 처분내용별 법적 근거

처분내용	근거법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(불법고용 외국인 포함)에게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■ 외국인 노동자(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)는 지체 없이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※ 위반시 200~300만 원 이하의 벌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제3호 ■ 감염병예방법 제46조 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5호(벌칙) ■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(벌칙)

7. 검사장소: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실제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

8. 검사비: 무료

9. 위반에 따른 벌칙 등

-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의제5호,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~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10. 불복절차 등

-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11. 문의처 : 경기도 외국인정책과(031-8030-4651, 4653, 4654)

시·군별 보건소, 기업·농축산업·건설 등 관련 부서. 끝.

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 안내

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,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.

-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**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?
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!**

-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,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,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.

**가까운 진료소 위치가 궁금할 땐 1339
통역이 필요할 땐 1345 또는 1330**

-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(1339),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1345)나 관광안내센터(133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전화번호	운영시간	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
(☎1345)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	24시간	영어, 중국어
	09:00 ~ 18:00	일본어, 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/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방글라데시어, 파키스탄어, 네팔어, 캄보디아어, 미얀마어, 프랑스어, 독일어, 스페인어, 필리핀어, 아랍어, 스리랑카어
(☎1330)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	24시간	영어, 중국어, 일본어
	08:00 ~ 19:00	베트남어, 태국어, 말레이/인도네시아어, 러시아어